

## <유형 1>

택시가 손님을 모시고 영업구역 외 지역으로 갔다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콜 손님을 모시고 사업구역으로 왔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 밖 영업에 저촉되는지?

▶답변

◎ 택시운송사업은 여객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 아래와 같이 2가지의 경우에만 사업구역 밖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 택시호출이 ㉡와 같은 사업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의 도로 갓길에 있는 때에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으나, 돌아오는 역방향에 위치하여 해당 승객을 태우러 거꾸로 운행하여야 한다든지 귀로하는 도로를 크게 벗어나 우회를 하여야만 해당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때에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

따라서, 귀로하는 도중 도로상의 승객이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태우고 올 수 있다는 뜻으로, 호출에 응하여 귀로중인 도로를 벗어나 해당 승객을 태우러 이동한 후 태워오는 영업은 동 규정과 배치되며, 그 지역 택시의 영업기회를 과도하게 뺏는 행위로도 볼 수 있어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함.

## <유형 2>

인천시 부평구에서 승객을 태우고 판교방향인 외곽순환도로로 이동할 때 처음은 인천지역이고 중간은 부천지역이었다가 다시 인천지역이고 다음은 다시 부천지역인데 요금미터기 조작에 있어서 시계의 할증을 다시 해지하였다가 다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 승객의 목적지가 타 사업구역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최종 경계지점(두번째 부천시점)에서 적용하여야 하며, 목적지가 동일 인천시 행정구역 내인 때에는 운행경로에 타 사업구역을 잠시 거친다하더라도 시계의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 <유형 3>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을 한 후 타 사업구역의 목적지에 내려준 후 곧바로 되돌아오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용변 등)으로 잠시(6분이상) 정차함. 용무를 마치고 다시 출발하려 할 때 승객이 승차하여 태우고 오는 경우 사업구역 밖 영업에 해당되는지?

#### ▶답변

◎ 사업구역 밖 영업에 해당하며,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곧바로(5분 이내) 되돌아와야 하며,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정차를 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함.(사업구역 택시 간 충돌 및 마찰 유발)

◎ 예컨대 승객의 목적지가 타 사업구역인 어느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 곧바로(5분 이내)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귀로를 하려 했으나,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용변, 식사 등)이 발생하여 5분(정차)이 경과한 때에는 이후 승객의 탑승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운수종사자는 타 사업구역 택시 이용을 안내하고 빈차로 돌아와야 함.(이를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업구역 간 극심한 마찰 및 다툼이 발생함.)

### <유형 4>

인천택시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오는 귀로방향 운행경로상의 호출승객을 태우고 인천시까지 운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 ▶답변

◎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 지역에서 사업구역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승객의 호출이 있는 경우, 해당 승객을 되돌아오는 도로변에서 승차시킬 수 있는 경우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영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호출한 승객의 위치가 귀로하는 도로변이 아닌 귀로방향 경로를 벗어나 별도로 승객의 위치까지 이동하여야만 승차시킬 수 있는 경우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함.

### <유형 5>

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 중인 차량을 사업구역 밖에 있는 승객이 콜(호출)을 하여 그 승객을 태우고 오는 경우 사업구역 위반인지?

㉔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리다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인지?

㉕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중 사업구역 밖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호출을 받고 태우러 가서 해당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인지?

▶답변

◎ 빈차인 상태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승객(가족 및 지인 포함)을 태우고 오는 행위와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인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여 내려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귀로하지 않고 영업목적으로 대기하다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함.

## <유형 6>

㉔ 다수의 여객이 택시 한 대에 승차하여 각자 다른 목적지에서 하차할 경우, 해당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㉕ 한명의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여 여러 곳을 경유하여 가자고 할 경우, 해당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

◎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함.

## <유형 7>

스마트폰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택시를 호출한 사람이 택시에 승차는 하지 않고 소지한 물건만을 원하는 목적지에 배달해 주면 관계자가 나와서 수령할 것이라 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답변

◎ 택시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따라서 택시에 승객은 승차하지 않고 화물만을 운송하는 요구에 응하여 화물만 운송한 때에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승차거부로 볼 수 없음.

## <유형 8>

택시기사가 먼저 호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동승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태워주는 택시기사의 행위는 합승에 해당되지 않는지?

### ▶답변

- ◎ 택시의 합승에 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합승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승객이 합승을 하도록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 ◎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장소에서 동료나 지인 등을 태울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합승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 <유형 9>

아파트는 사유지로 외부차량은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고 외부차량 진입시 경비실에 방문 확인 후 진입할 수 있고,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음.  
사유지이지만 아파트 주민인 승객이 원하는 경우이니 승객이 원하는 장소까지(아파트 내부 혹은 지하주차장 등) 진입해야 하는지?

### ▶답변

- ◎ 택시운송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공로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사유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운행할 수 없는 장소로도 볼 수 없고, 입주민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운행할 수 있는 지역임.
- ◎ 또한, 아파트 사정으로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없는 도로이며, 승객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인 경우 택시 이용편의를 위해 본인의 아파트 내로 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애당초 아파트 진입을 차단하거나 또는 시설물 공사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도하차로 보는 것이 택시운송사업 도입취지에 부합됨.

## <유형 10>

승객이 목적지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인 모바일 호출 앱을 이용 호출이 이뤄졌으나, 승객이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운행을 요구함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당초 모바일 호출 앱에 따른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택시 승객의 목적지 변경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도중에도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같이 미리 전화 등을 통해 목적지를 알려주는 형태의 호출이 있었다하더라도 승객의 사정에 따라 목적지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운수종사자는 변경된 목적지에 응하여 운행을 하여야 함.

◎ 만약, 이러한 목적지 변경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인정될 경우, 택시 호출에 있어 심각한 골라 태우기가 성행하여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짐. 따라서 택시 호출 시에 정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유형 11>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 처음에 함께 타지 않고 중간에 경유하여 지인을 추가로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택시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승차한 승객을 내리게 한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답변

◎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에 해당함.

## <유형 12>

택시발전법상 합승행위는 처벌의 대상인데 승객의 양해를 구한 때에도 합승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가능한지?

▶답변

◎ 운수종사자가 사전에 여객의 양해를 구하고 제3자를 태웠다하더라도 이는 운수종사자의 주도 하에 여객을 합승하도록 한 행위이므로 합승행위 범주에 속함.

### <유형 13>

승객들이 주도하여 합승을 하였고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여 한 명만 태운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답변

- 승차거부에 해당함.

### <유형 14>

승객의 목적지가 사업구역 내 이지만 중간에 사업구역 밖을 경유할 경우 경유하는 동안 시계의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 사업구역일 경우 시계의 할증을 적용할 수 없음.

### <유형 15>

만약 여행사가 여행객 수송을 위해 택시업체와 제휴를 맺고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업체에 알선료를 받는 행위가 택시법령에 위반되는지?

여행사가 여행사 고객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이동요청에 택시업체를 중개하고 택시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택시법령에 위반되는지?

▶답변

- 택시가 여객을 운송한 후, 미터기 요금을 전액 받았다면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으며,

- 여행사가 택시 중개에 따른 알선료를 택시업체로부터 받는 행위는 택시 관계법령에서 금지 등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는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사항임.

## <유형 16>

승객이 시외 지역으로 운행 요청시 기사에게 금액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 때 기사가 미터기 요금으로만 간다고 하면 승객이 정액제로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상황에서 기사가 원칙대로 미터기요금만을 고수하면서 승객이 정액제로 가자고 하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지?

▶답변

◎ 미터기로 정산된 요금이 아닌 임의로 정한 정액제로 운행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경우 운수 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유형 17>

택시 요금을 미터기 요금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손님과 기사 간 협의 하에 일정금액을 내고 관광을 해도 부당요금에 해당되는지?

▶답변

◎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의해 계산된 요금을 수수해야 하며, 미터기 요금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에는 모두 부당요금에 해당함.

## <유형 18>

택시를 전화 등으로 호출하여 이용하려 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호출에 응하는 택시에 미터기 요금 이외에 추가의 요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택시는 이에 응하여 해당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준 후 미터기 요금이외에 추가의 금전을 수수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당요금에 해당하는지?

▶답변

◎ 승객의 자발적인 추가요금이라 할지라도 미터기 요금 이외에 추가적인 요금을 받는 것은 모두 부당요금에 해당함.

## ※승차거부의 개념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영업중에 있는” 택시의 : 운전자가 영업의사가 있어 빈차임을 알리는 표시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

“탑승”을 원하는 : 승객의 명시적인 의사표시(큰소리, 손을 흔들), 차량 앞·뒤 문을 열었을 때 승차거부

“정상적인 승객”

“고의로” : 빈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승객을 임의로 골라 태우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

-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②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행위
- ③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갑자기 출발해 버리는 행위
- ④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⑤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⑨ 오래 기다렸다고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토록 유도하며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선호하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행위

-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 주행 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단, 귀가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표시등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함.)
-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단, 교대시간(차고지입고 기준)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콜 호출 여부 확인필요)
-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운송의무 있음)
-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를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⑧ 4차로 도로에서 1,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2차로로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 ⑨ 택시 승차대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할 경우 순서대로 앞차를 탈 것을 권유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다만, 해당 사유는 택시 승차대 내에서만 해당되며 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택시 등에는 해당 되지 않음)
-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